

P54 (해당 페이지 개정사항이 많아, 아예 새로이 출력하여 대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)

	<p>26년 개정</p> <p>-고시금액 *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</p> <p>① 출산휴가, 유사산 휴가, 육아휴직 등 사용 <u>前</u>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,</p> <p>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<u>後</u>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</p> <p>- 지원금의 <u>100%</u>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</p> <p>① 출산휴가, 유사산 휴가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<u>前</u>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→ 출산휴가, 유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<u>後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</u></p> <p>② 출산휴가, 유사산 휴가,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→ 출산휴가, 유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<u>시작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</u></p> <p>③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<u>後</u>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→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<u>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 or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(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)</u></p>
신청 기간	<p>기본: 출산휴가, 유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 <u>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</u></p> <p>복직 후 인수인계기간: <u>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</u></p> <p>(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 이직: <u>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</u>)</p>
구분	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휴 or 육단 부여, 업무분담지원금)
육휴 or 육단 부여	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
업무 분담	<p>①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<u>30일 이상 하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</u>의 사업주</p> <p>②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<u>30일 이상</u> 부여 (육단은 단축된 근로시간이 <u>1주 10시간 이상일 것</u>)</p> <p>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<u>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</u> + 해당 <u>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</u>을 하였을 것</p>
지원 금액	<p>① 육아휴직 or 육아기 단축 30일 이상 부여: <u>지원금의 100분의 50</u> 지급 → 시작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<u>신청 + 나머지는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</u>하는 경우 지급 →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or <u>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꺼번에 신청(이직한 경우)</u></p> <p>② 업무분담지원금: <u>업무분담지원금의 100%</u></p>
신청 기간	<p>기본: 출산휴가, 유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 <u>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</u></p> <p>나머지: 육아휴직등이 <u>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</u></p> <p>(근로자가 이직한 경우: <u>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</u>)</p>

고 용 보 험 법	P27 구직급여 상한액	(기존) 상한액: <u>1일 11만원</u>
		(개정) 상한액: <u>1일 11만 3천 500원</u>
	p40 구직급여 일액	(기존) 기초일액의 100분의 60(상한액 <u>66,000원</u>)
		(개정) 기초일액의 100분의 60(상한액 <u>68,100원</u>)
	P43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액	(기존) 1주당 최초 10시간까지: 상한액 <u>220만원</u> 나머지 단축시간: 상한액 <u>150만원</u>
		(개정) 1주당 최초 10시간까지: 상한액 <u>250만원</u> 나머지 단축시간: 상한액 <u>160만원</u>
P54 고용유지 지원금 의의	(기존)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, 휴직~	
	(개정)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<u>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</u> ~	
산 재 보 험 법	P67 위원장	(기존) 위원장: <u>고용노동부차관</u>
		(개정) 위원장: <u>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</u>
	P68 공익위원	(기존) ① <u>고용노동부차관</u>
		(개정) ① <u>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</u>
	P98 2. 기금의 관리운용	-
		(개정) 내용추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(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.)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P100 심화	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「국가회계법」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<u>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	
	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「국가회계법」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<u>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	
	P137	(기존) <u>기재부장관,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</u>

사회보장기본법	부위원장	(개정) <u>기획예산처장관</u> ,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			
	P137 위원	(기존) 행안부장관, 고노부장관, <u>여가부장관</u> , 국토부장관 포함 (개정) 행안부장관, 고노부장관, <u>성평등가족부장관</u> , 국토부장관 포함			
		(기존) 생 략			
		(개정)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실무위원회</th> <th>전문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<u>기획예산처차관</u>, 교육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가보훈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<u>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</u>, 고용노동부차관, <u>성평등가족부차관</u>,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<u>차장</u></td><td>1.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 2. 실무위원 중 위촉된 위원 3. 사회보장, 지역사회복지, 경제,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)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나. <u>기획예산처</u>,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국가보훈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<u>산업통상부</u>,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, 고용노동부, <u>성평등가족부</u>,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실무위원회	전문위원회	1. <u>기획예산처차관</u> , 교육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가보훈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<u>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</u> , 고용노동부차관, <u>성평등가족부차관</u> ,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<u>차장</u>
실무위원회	전문위원회				
1. <u>기획예산처차관</u> , 교육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가보훈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<u>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</u> , 고용노동부차관, <u>성평등가족부차관</u> ,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<u>차장</u>	1.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 2. 실무위원 중 위촉된 위원 3. 사회보장, 지역사회복지, 경제,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)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나. <u>기획예산처</u> ,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국가보훈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<u>산업통상부</u> ,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, 고용노동부, <u>성평등가족부</u> ,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				
P138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					
P140 3번째 칸	(기존)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,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<u>기재부장관</u> ,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)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,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<u>기획예산처장관</u> ,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			

	P141 3번째 칸	(기존)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, 조정결과를 해당 중행장, <u>기재부장관</u> , 행안부장관,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(개정)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, 조정결과를 해당 중행장, <u>기획예산처장관</u> , 행안부장관,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				
	P153 위원	(기준) ④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(개정) ④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(재정경제부,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中 소속 기관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)				
	P159 비상임이사 감사	(기준) 생략 (개정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">이사</td>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상임이사: 5명/ <u>이사장이</u> 임명 비상임이사: 9명/ 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 임명 <u>-노동조합 · 사용자단체 · 시민단체 · 소비자단체 ·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</u> <u>-보건복지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</u> </td></tr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">감사(상임)</td><td style="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+ <u>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</u> + 대통령 임명</td></tr> </table>	이사	상임이사: 5명/ <u>이사장이</u> 임명 비상임이사: 9명/ 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 임명 <u>-노동조합 · 사용자단체 · 시민단체 · 소비자단체 ·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</u> <u>-보건복지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</u>	감사(상임)	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+ <u>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</u> + 대통령 임명
이사	상임이사: 5명/ <u>이사장이</u> 임명 비상임이사: 9명/ 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 임명 <u>-노동조합 · 사용자단체 · 시민단체 · 소비자단체 ·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</u> <u>-보건복지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</u>					
감사(상임)	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+ <u>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</u> + 대통령 임명					
건 강 보 험 법	P160 재정운영위	(기준) 생략 (개정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 vertical-align: top;"> ① 위원장은 위원(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or 위촉) 중 위원회가 호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노동조합, 사용자단체 추천 각 5명</u>) -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농어업인 단체 · 도시자영업자단체 ,시민단체 추천</u>) - 공익대표위원 10명 (<u>재정경제부장관&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+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) ②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심의, 의결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 </td> </tr> </table>	① 위원장은 위원(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or 위촉) 중 위원회가 호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노동조합, 사용자단체 추천 각 5명</u>) -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농어업인 단체 · 도시자영업자단체 ,시민단체 추천</u>) - 공익대표위원 10명 (<u>재정경제부장관&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+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) ②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심의, 의결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			
① 위원장은 위원(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or 위촉) 중 위원회가 호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노동조합, 사용자단체 추천 각 5명</u>) -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명 (<u>농어업인 단체 · 도시자영업자단체 ,시민단체 추천</u>) - 공익대표위원 10명 (<u>재정경제부장관&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+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) ②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심의, 의결 ③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						
	P166 심평원감사	(기준) 2년(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 + <u>기재부장관 제청</u> + 대통령 임명) (개정) 2년(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 + <u>재정경제부장관 제청</u> + 대통령 임명)				
	P168	(기준) 1점당 208.4원				

	재산보험료 부과점수	(개정) <u>1점당 211.5원</u>
국 민 연 금 법	P178 이사와 감사	<p>(기존) 생 략</p> <p>(개정)</p> <p>③ 이사 <u>10명</u>(이사장 제청 + 보건복지부장관 임면) ④ 감사 1명(이사장 제청 + 보건복지부장관 임면) → 이사에 포함되는 자</p> <p>- 사용자대표, 근로자 대표, 지역가입자 대표, 수급자 대표 각 2명 포함</p> <p>-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中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</p> <p>-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 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</p>
	P186~18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	<p>(기존) 생 략</p> <p>(개정)</p> <p>3.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: 15만 원 + (초과 소득월액 - 200만 원) × 1천분의 150 4. 초과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: 30만 원 + (초과 소득월액 - 300만 원) × 1천분의 200 5. 초과소득월액이 400만 원 이상: 50만 원 + (초과 소득월액 - 400만 원) × 1천분의 250</p>